

보행 자세(제17조 관련)

1. 보행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가. 분당 110~120보의 속도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발을 곧게 디디고 양발은 평행으로 한다. 이때 무릎은 곧게 편다.

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허리는 곧게 펴며, 주먹은 자연스럽게 감아쥐면서 팔은 과도히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45도, 뒤로 15도로 흔든다.

2. 보행 시 유의사항

가. 상급자를 수행할 때에는 좌측 1보 뒤에서, 안내할 때에는 우측 1보 앞에서 상급자의 보조를 맞추어 걷는다.

나. 보행 시 아래와 같은 후보생 품위 저해 행위가 없도록 유의한다.

(1) 음식물 취식, 침 빨기,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

(2) 품위를 손상시키는 물건을 손에 들고 다니는 행위

외출 시 물건은 소형가방(외출용 가방)에 넣는다.

(3) 보행 시 타인과 손을 잡는 행위

단, 도움이 필요한 경우(노약자, 부녀자, 연소자 등)에는 손을 잡을 수 있다.

(4) 보행 중 휴대용단말기를 사용하는 행위